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기 관	책 임 자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연준 (02-2100-2680)	허남혁 주무관 (2695)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홍순간 (02-3145-7290)	김세동 팀 장 (7320)	
	회계기획감리총괄팀장 권영준 (02-3145-7878)		황인협 팀 장 (7862) 권영민 팀 장 (7863)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8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에스마크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2021.2.8.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씨젠</p> <p>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3.31. 2019.6.30.</p> <p>코스닥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p>	<p>【회사】</p> <p>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13년 4,241백만원, ’14년 10,609백만원, ’15년 14,072백만원, ’16년 12,259백만원, ’17년 10,163백만원, ’18년 8,961백만원, ’19년 1분기 9,176백만원, ’19년 반기 8,117백만원)</p> <p>- 회사는 국내·외대리점에 대하여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등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p> <p>-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p> <p>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12년 31,423백만원, ’14년 26,337백만원, ’16년 44,650백만원, ’17년 12,046백만원)</p> <p>-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p> <p>③ 개발비 과대계상 (’11년 5,683백만원, ’12년 7,354백만원, ’13년 8,807백만원, ’14년 11,195백만원, ’15년 12,689백만원, ’16년 14,429백만원, ’17년 17,004백만원)</p> <p>-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함</p>	<p>회 사 :</p> <p>- 과징금</p> <p>※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p> <p>- 감사인지정 3년</p> <p>-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p> <p>- 내부통제 개선권고</p> <p>- 각서 제출요구</p> <p>※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p> <p>※ 회사는 증선위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금감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함</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씨젠</p>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13년 4,24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 수익인식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31,42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③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년 5,683백만원, ’12년 7,354백만원, ’13년 8,80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舊 다인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생략(’14년 해산)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씨젠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년 10,609백만원, ’15년 14,072백만원, ’16년 12,259백만원, ’17년 10,163백만원, ’18년 8,96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 수익인식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년 26,337백만원, ’16년 44,650백만원, ’17년 12,04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③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4년 11,195백만원, ’15년 12,689백만원, ’16년 14,429백만원, ’17년 17,00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우덕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정지건의 6월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코썬바이오 (舊 (주)현성바이탈)</p> <p>결산기 : 2017.12.31. 2018.12.31. 2019.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p>	<p>【회사】</p> <p>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17년 연결 : 22,251백만원, ’18년 연결 : △11,027백만원, 별도 : 852백만원, ’19년 연결 : △11,224백만원, 별도 : △840백만원)</p> <p>- 회사는 종속기업이 거래처(판매회원)에 대한 할부 판매에서 발생한 소액의 다수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별로 집합평가를 하지 않고 대손율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과대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용한 사실이 있으며,</p> <p>-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 되고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해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별도재무제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②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등 과소·과대계상 (’17년 연결 : 35,226백만원, 별도: 58,663백만원, ’18년 연결 : △23,642백만원, 별도 : 28,977백만원, ’19년 연결 : △11,584백만원, 별도 : △28,977백만원)</p> <p>- 회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으로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평가를 소홀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③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p> <p>- 회사는 ‘19.9.6.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17년, ’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회 사 :</p> <p>- 증권발행제한 10월</p> <p>- 과태료 36백만원</p> <p>- 감사인지정 3년</p> <p>- 前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p> <p>- 시정요구</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코썬바이오 (舊 (주)현성바이탈)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22,251백만원, '18년 연결 : △11,027백만원, 별도 : 852백만원)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종속회사에서 거래처에 대한 할부매출채권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35,226백만원, 별도 : 58,663백만원, '18년 연결 : △23,642백만원, 별도 : 28,977백만원)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등의 손상 검토를 하면서 종속회사의 할부판매 중단효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가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계법인 새시대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주)코썬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공인회계사 1인 : - 직무정지건의 2년 - (주)코썬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1인 :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코썬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에이플</p> <p>결산기 : 2017.12.31. 2018.12.31. 2019.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 방문판매업</p>	<p>【회사】</p> <p>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17년 22,251백만원, '18년 11,224백만원, '19년 △11,224백만원)</p> <p>-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할부판매에서 발생한 소액의 다수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별로 집합평가를 하지 않고, 대손율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회 사 :</p> <p>- 증권발행제한 8월</p> <p>- 감사인지정 2년</p> <p>- 시정요구</p> <p>※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에이플</p>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22,251백만원, ’18년 11,224백만원)</p> <p>- 감사는 거래처에 대한 할부매출채권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회계법인 새시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주)에이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에이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이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에스마크</p> <p>결산기 : 2016.12.31. 2017.12.31.</p> <p>사업보고서제출대상 비상장법인</p> <p>업종 : 면 방적업</p>	<p>【회사】</p> <p>①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자산 허위계상 (’17년 별도 5,284백만원, ’17년 연결 5,2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계상함 <p>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별도 ’16년 14,485백만원, ’17년 1,000백만원 연결 ’16년 12,678백만원, ’17년 2,21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16년 인수한 (주)OOOO가 원천특허·인력·자금이 없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 (주)OOOO에 지급한 보증금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인식하지 않음 <p>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별도·연결 ’16년 15,408백만원, ’17년 7,9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대여금 등 자금거래를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음 <p>④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 과대계상 (별도·연결 ’16년 32,388백만원, ’17년 5,1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현금흐름표에 현금유출입이 없는 유상증자 및 주식 취득 등을 현금유출입이 있는 것으로 표기함 <p>⑤ 전환사채 등 유동성분류 오류 (’16년 별도·연결 46,40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보고기간 후 1년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전환사채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p>⑥ 파생상품부채 과소계상 (별도·연결 ’16년 4,426백만원, ’17년 1,5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등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면서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없이 부채를 과소계상함 <p>⑦ 증권신고서 거짓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증권신고서(’17.4.17.)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6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p>⑧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18.4.13.)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p>회 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발행제한 12월 - 과징금(前대표이사 16백만원) - 과태료 60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등 6인) <p>※ 前대표이사, 前감사 등의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같음</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에스마크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별도 3,284백만원, ’17년 연결 3,2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목적에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매도 가능증권 등으로 허위계상하였음에도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16년 14,485백만원, ’17년 1,000백만원 연결 ’16년 12,678백만원, ’17년 2,21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는 (주)OOOO에 대해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음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 회사가 (주)OOOO에 지급한 보증금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액 손상차손으로 하여야 함에도 손상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③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16년 15,408백만원, ’17년 7,9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④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16년 32,388백만원, ’17년 5,1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현금흐름표에 현금유출입이 없는 유상증자 및 주식 취득 등을 현금유출입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⑤ 전환사채 등 유동성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별도·연결 46,40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전환사채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⑥ 파생상품부채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16년 4,426백만원, ’17년 1,5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 등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면서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없이 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p>서린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4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 (주)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